

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



정부지원
저금리
주택자금대출

■ 대출대상자

성년인 세대주로 배우자 합산 연소득 5천만원(신혼가구는 6천만원) 이하이고 임대차계약 체결후 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(퇴거주택 제외) 다음 각호의 자

- 재난안전법상 안전등급 D, E 등급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
(단, 세입자는 정비사업으로 이주가 진행중인 사업장 거주자에 한함)
-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(재개발, 주거환경개선사업)으로 지정/고시된 지역의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소유자
- 지자체, LH,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

■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㎡이하(수도권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㎡) 및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(지방소재 2억원)인 주택

■ 대출금리 연 1.3% (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변동금리)

■ 대출한도 수도권 : 호당 150백만원 / 기타지역 : 호당 120백만원 (단, 임차보증금의 80% 이내)

■ 대출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

■ 기한연장 대상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 및 거주하고 있는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2회 연장

※ 기한연장 불가 조건

- 본 자금의 대출 취급 이후 퇴거주택에 대한 추가 전입이 있는 경우
- 대출 취급 이후 다른 주택을 구입한 경우(연장시는 무주택 검색)
- 해당 주택의 정비 사업이 완료된 경우 퇴거주택 소유자

■ 담보취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신용 보증서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대출 보증서 (단, 공공기관은 담보 취득 생략)

■ 기타

- 대출 신청 시기 :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
- 중복대출 금지 : 대출신청인(세대원 전원)이 전세자금(이주비 포함) 또는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취급 제한
- 지자체장 확인 : 지자체장이 발급한 “확인서” 또는 공문 징구

■ 준비서류

- 지자체장이 발급한 “확인서” 또는 공문
- 확정일자부 임대차(전세)계약서 사본 (원본지참 대조)
-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(1개월 이내 발급분)
- 계약금 영수증
- 주민등록등본 (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)
- 가족관계증명서 (필요 시)
- 결혼예정자의 경우 결혼예정 증빙서류 (예식장계약서, 청첩장 등)
- 퇴거주택의 전입세대 열람내역 (기한 연장 시)

※ 상기 내용은 2017. 09. 20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, 추후 정부시책, 자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※ 대출신청인이 신용관리대상자이거나 자금운용계획에서 정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※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만기일이 경과한 경우 연체이자 부과 및 신용관리대상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.

※ 대출받은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대출상환 의무가 있습니다.

※ 안내장 게재면적 제한으로 상기 상품의 필요 공지사항의 전부를 표기할 수 없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참조하시고,

가까운 영업점이나 고객센터(1599-0800, 1599-5000, 1588-5000)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은행 홈페이지 : www.wooribank.com

2017.09.13 준법감시인 1690 심의필 (유효기간 : 2018.12.31) 담당부서 : 주택기금부